『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주요 내용 신구대비표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제1장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요				
2	**제2절. 적용범위 및 근거조항** **2. 근거조항**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연구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보호·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공동관리규정 제14조 제7항)	2	**제2절. 적용범위 및 근거 조항** **2. 근거조항**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6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연구개발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보호·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17.5.8.) 반영
2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구성** 〈그림1〉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프로세스 	2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구성** 〈그림1〉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프로세스 	- 공동관리규정상 R&D수행 절차로 정비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4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령체계** **세부규정(부령, 지침)** (신 설)	5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령체계** **세부규정(부령, 지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미래부 고시)	- 세부규정(부령,지침)에 미래창조과학부 ICT분야 고시 추가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4	(신 설)	6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성과평가를 통해 연구성과를 향상시키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 *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해 연구개발과제 성과평가지침을 마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5년	- R&D수행 시 성과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적용해야하는 법률 추가 명시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td><td></td><td></td><td>이상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추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성과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성과평가지침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표준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td><td></td></tr>
<tr><td>5</td><td>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td><td>6</td><td>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td><td>- 과학기술기본법(’15.12.22) 및 공동관리규정(’17.5.8.) 개정 반영</td></tr>
<tr><td>6</td><td>3. 부처별 훈령·예규·지침
<table><tr><th>부 처</th><th>세 부 규 정</th></tr><tr><td>교육부</td><td>「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td></tr><tr><td>국토교통부</td><td>「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td></tr><tr><td>농림축산식품부</td><td>「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td></tr><tr><td>문화체육관광부</td><td>「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td></tr><tr><td>미래창조과학부</td><td>「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td></tr></table></td><td>8</td><td>3. 부처별 훈령·예규·지침
<table><tr><th>부 처</th><th>세 부 규 정</th></tr><tr><td>교육부</td><td>「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td></tr><tr><td>국토교통부</td><td>「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td></tr><tr><td>농림축산식품부</td><td>「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td></tr><tr><td>문화체육관광부</td><td>「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td></tr><tr><td>미래창조과학부</td><td>「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td></tr></table></td><td>- 국가R&D수행 부처별 훈령·예규·지침 정비</td></tr>
</table>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td><td><table>
<tr><th>부 처</th><th>세 부 규 정</th></tr>
<tr><td></td><td>「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td></tr>
<tr><td>보건복지부</td><td>「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td></tr>
<tr><td>산업통상자원부</td><td>「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td></tr>
<tr><td>안전행정부</td><td>「안전행정부 소관 재난안전관련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td></tr>
<tr><td>해양수산부</td><td>「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td></tr>
<tr><td>환경부</td><td>「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td></tr>
<tr><td>식품의약품안전처</td><td>「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td></tr>
<tr><td>기상청</td><td>「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td></tr>
<tr><td>농촌진흥청</td><td>「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사업운영규정」</td></tr>
<tr><td>문화재청</td><td>「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td></tr>
<tr><td>산림청</td><td>「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td></tr>
<tr><td>소방방재청</td><td>「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td></tr>
<tr><td>중소기업청</td><td>「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td></tr>
</table></td><td></td><td><table>
<tr><th>부 처</th><th>세 부 규 정</th></tr>
<tr><td></td><td>「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td></tr>
<tr><td>보건복지부</td><td>「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td></tr>
<tr><td>산업통상자원부</td><td>「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td></tr>
<tr><td>해양수산부</td><td>「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td></tr>
<tr><td>환경부</td><td>「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td></tr>
<tr><td>국민안전처</td><td>「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td></tr>
<tr><td>식품의약품안전처</td><td>「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td></tr>
<tr><td>경찰청</td><td>「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td></tr>
<tr><td>기상청</td><td>「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td></tr>
<tr><td>농촌진흥청</td><td>「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td></tr>
<tr><td>문화재청</td><td>「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td></tr>
<tr><td>방위사업청</td><td>「방위사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td></tr>
<tr><td>산림청</td><td>「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td></tr>
<tr><td>중소기업청</td><td>「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td></tr>
<tr><td>원자력안전위원회</td><td>「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td></tr>
</table></td><td></td></tr>
<tr><td>6 ~ 8</td><td>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용어
1. 규정 및 과제관리
○ 공동관리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 약칭

○ 전문기관
「과학기술기본법」 -------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행정권한의 위탁절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td><td>9~14</td><td>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용어
1. 규정 및 과제관리
○ 공동관리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 및 제16조의2에 따른 ---------- 약칭

○ 전문기관
「과학기술기본법」 ----------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 하거나 지정한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6호)</td><td>-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 17.5.8.) 반영</td></tr>
</table>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 협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가 ----------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신 설) ○ 연구개발서비스업 영리를 목적으로, -------- 연구개발지원업		○ 협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가 ----------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 ○ 참여기업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9호) ○ 연구개발서비스업 영리를 목적으로, -------- 연구개발지원업(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8	**2. 연구수행 및 연구비** ○ 출연금 - 국가재정법 ----------. - 산업통상자원부는 ----------. - (신 설)	11	**2. 연구수행 및 연구비** ○ 출연금 - 국가재정법 ---------- . - 산업통상자원부는 ---------- . - 연구개발예산의 명칭은 공동관리규정에서 정한 대로 일반적으로 '연구개발비'라고 사용하고, 환수조치할 경우 '사업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함	
10	**3. 평가 및 기술료 등** ○ 진도점검(연차점검)	13	**3. 평가 및 기술료 등** ○ 진도점검(연차점검)	- 일부부처 해당사항 삭제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보건복지부의 경우 총 연구기간이 2개년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계속지원 여부 및 연구비 규모 등을 결정할 목적으로 전년도 실적 및 해당연도 계획을 평가함		(삭 제)	
	○ (신 설)		○ 중간평가 연구과제의 중간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평가해 과제 계속 지원(컨설팅, 개선의견 제시 등 포함), 중단 등을 결정하는 절차	- 중간평가 정의 추가
	○ 단계평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기술개발 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		○ 단계평가 해당 단계 연구개발 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계획서 등을 평가해 과제 계속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는 절차	- 단계평가 정의 수정
	○ 연구부정행위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14	○ 연구부정행위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표준화(안)의 공동관리규정 반영으로 삭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용어 표준화(안)>		(삭 제)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13	제1절 기획·공고	16	제1절 기획·공고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1. 사전조사 및 기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 -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 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 (신 설) - (신 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을 조사하여 반영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의 경우는 동향조사 미실시		1. 사전조사 및 기획 ○ (삭 제)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 (삭 제) ○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을 조사 ※ 조사 제외 대상 - 기초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동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	('17.5.8.) 반영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 (신 설)	17	획연구를 하는 경우 ○ 부처 협업 사업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상호협의를 통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각각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부처별로 출연한 연구개발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음(제28조의2)	
14	**2. 사업공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일정 등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공고 - 다만, 국가 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음 - (신 설) - (신 설)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감점 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 (신 설)	17	**2. 사업공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 혁신도약형·경쟁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표시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7.5.8.) 반영
15	**제 2절 과제신청** **1. 연구과제 신청** **가. 신청방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	18	**제 2절 과제선정** **1. 연구과제 신청** **가. 신청방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7.5.8.) 반영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td><td>- (신 설)</td><td></td><td>- 연구개발제안서는 신규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계획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td><td></td></tr>
<tr><td>16</td><td>나. 참여자격
〈표 3〉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사전지원제외 대상 관련 규정 비교
<table><tr><td>미래부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별표2,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97호, 2014. 1. 6.)</td></tr><tr><td>■ 기업의 부도</td></tr><tr><td>■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td></tr><tr><td>■ 채무불이행자</td></tr><tr><td>■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td></tr><tr><td>■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td></tr><tr><td>■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td></tr><tr><td>■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td></tr></table></td><td>18</td><td>나. 참여자격
〈표 3〉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사전지원제외 대상 관련 규정 비교
<table><tr><td>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별표2,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2017. 1. 24.)</td></tr><tr><td>■ 기업의 부도</td></tr><tr><td>■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td></tr><tr><td>■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td></tr><tr><td>■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td></tr><tr><td>■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td></tr></table></td><td>- 미래창조과학부(ICT)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개정 사항('17.1.24.) 반영</td></tr>
</table>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td><td></td><td></td><td>■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td><td></td></tr>
<tr><td>18</td><td>2. 연구과제 평가 및 선정
가.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NTIS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평가위원 후보단 중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해 관계자는 평가단에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td><td>23</td><td>2. 연구과제 평가 및 선정
가.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NTIS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1]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 단,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준은 최소화 하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기준은 부처・기관별로 별도 설정 가능
※ 전문가 자원이 협소한 특수・첨단 기술분야에 경우 선택적 제척기준(공무원·전문기관 직원, 친족, 상호간 평가자, 사제관계, 동일기관) 미적용
1) 각 부처는 평가위원 풀 확대를 위해 퇴직과학기술인을 적극적으로 평가위원 풀에 포함시키고,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희소분야 및 전문기관별 전문가 수요가 많은 기술분야의 신규 등록 전문가 정보 등을 NTIS에 주기적으로 제공</td><td>- 정책 추진 사항 반영</td></tr>
<tr><td>18</td><td>(신 설)</td><td></td><td>〈표4〉 평가위원 제척기준 중 필수 제척기준과 선택적 제척기준
<table><tr><th>구분</th><th>제척기준</th></tr><tr><td>필수
제척
대상</td><td>① 평가대상 과제의 참여연구원
②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③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td></tr></table></td><td></td></tr>
</table>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선택적 제척 대상: ① 중앙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②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③ 상호간 평가자 ④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 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⑥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신 설)	24	○ 평가위원 '질' 관리 강화를 위해 평가위원 풀에서 적합한 우수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부적합 평가위원은 배제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선정전에 과제 신청자가 평가에 적합한 또는 부적합한 인물 제시 가능하고, 평가 시 이를 참고할 수 있음 -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적절·불성실 평가자 배제 *예시) 평가장면 모니터링, 평가위원 간 평가, 피평가자의 평가위원 평가 등 - - 평가의 연속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책임평가위원제* 도입 가능 *전문성이 뛰어나고 성실한 일부 선정평가위원이 연차·중간·최종평가에 참여	
18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대상>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상호간 평가자 • 비고 : "상호간 평가자"란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대상[별표1]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상호간 평가자, 평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5.12.22.) 반영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함 -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음 -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 을 받은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을 한 사람 • 비고 : “상호간 평가자”란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함 -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음 -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18	**나.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사전검토** ○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은 ---------- 검토 - (신 설)	25	**나.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검토 사항** ○ 중앙행정기관은 ----------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의 ①본문 분량을 한정하고, ②연구계획과 관련 없는 불필요 항목삭제 및 ③선정 후 협약단계에서 보완·제출 가능한 서류는 연구과제 신청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을 최소화 ① 핵심 내용위주로 5억원 이하는 5쪽 이내, 5억원 초과는 10쪽 내외로 작성. 불가피한 경우(기초과제 중 대형, 집단인 경우와 다수기관이 참여(컨소시엄 등)하거나 기술개발, 실용화 같은 응용·개발 연구과제 등 연구개발계획을 상세히 작성해야하는 경우) 분량제한 완화 ② 재직경력, 수상경력, 국내외 학(협)회 활동, 경제적 기대효과(기초분야) 등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17.5.8.) 반영 - R&D 표준서식 간소화 방안(’16.10월/국과심 운영위) 반영
19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사전 검토사항> - 연구개발 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연구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검토 사항(제7조제3항)> -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및 사전 조사 수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신청자격, 의무사항불이행,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참여제한 - 보안등급의 적정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 금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 보안등급의 적정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 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	('17.5.8.) 반영
19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및 감점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점 및 감점 표준화(안)> (신 설) (신 설)	26 ~ 31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및 감점 기준** (삭 제) <연구개발과제 우대기준(제7조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점 및 감점 기준> - <부처별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추가 우대 또는 가점 기준> - <부처별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추가 감점 기준>	- 공동관리규정에 기 반영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17.5.8.) 반영 및 [별표 1의3]및 부처별 특성이 반영된 가감점 기준 안내
20	**라. 신청과제의 평가** <신청과제 평가 방법> (신 설)	32	**라. 신청과제의 평가** <신청과제 평가 방법 예시> 구분 / 내용 서면평가(온라인 평가) / 연구보고서 등 제출된 자료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평가 토론평가 / 연구보고서 등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전문평	- 실제 평가방법 예시 제공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td><td>(신 설)</td><td></td><td>
<table>
<tr><td></td><td>가자의 과제 검토 결과 발표 후, 평가위원 간 질의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td></tr>
<tr><td>발표평가</td><td>연구보고서 등 제출된 자료와 연구과제 책임자의 발표·질의 답변 및 평가위원 간 토의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td></tr>
<tr><td>현장평가</td><td>연구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td></tr>
</table>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른 평가 주안점>
- 연구과제 유형(기초, 응용, 개발 등)을 고려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제시
※ 다만, 연구과제 유형과 관계없이 선정평가 단계가 중요하며, 선정평가 시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 중심의 정성평가 실시
- (기초연구) 창의성·도전성 중심 평가
• 순수 기초연구의 경우 중간평가·최종평가 제외 또는 최소화
※ 자유공모형 과제의 경우 온라인평가 확대
- (응용연구) 중간(컨설팅 개념)평가 중심, 연구 역량·사회적 파급효과 위주 평가
• 중간평가 시 과제의 성공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과제의 방향성 및 목표 달성 지원 방안 제시
- (개발연구) 최종 결과물 중심, 기업수요·성과활용 위주 평가
• 최종평가 시 향후 과제의 최종 목표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제품화, 사업화 등)을 위해 추적평가 강화
</td><td>- 기초·응용·개발연구에 따른 평가 주안점 제시</td></tr>
<tr><td>22</td><td>제3절 과제협약 및 변경
1. 협약체결
○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 이하 동일)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td><td>34</td><td>제3절 과제협약 및 변경
1. 협약체결
○ 중앙행정기관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td><td>-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7.5.8.) 반영</td></tr>
</table>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 전자협약: 전자협약은 전문기관의 협약사이트에서 산학협력단의 공인인증을 ---------- 등록 (연구재단 E-RND, 산기평 I-tech, 농진청 Atis 등)		- 전자협약: 전자협약은 전문기관의 협약사이트에서 연구기관의 공인인증을 ---------- 등록(연구재단 E-RND, IITP SMART, 산기평 I-tech, 농진청 Atis 등)	- 협약주체를 연구기관으로 변경, 미래창조과학부(ICT) R&D사업 전자협약 시스템 안내
22	- 협약당사자가 갑, 을, 병 등 다수의 기관이 있는 경우는 협약서와 계획서를 협약 기관의 수대로 준비하여 연구기관장의 직인을 날인 〈그림 4〉 협약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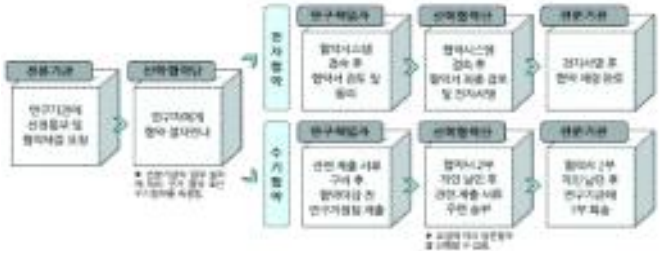		- 협약당사자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등 다수의 기관이 있는 경우는 협약서와 계획서를 협약기관의 수대로 준비하여 연구기관장의 직인을 날인 〈그림 4〉 협약 프로세스 	- 공동관리규정 [별지 제3호의2서식] 협약서 용어 변경 반영 - 협약주체를 연구기관으로 변경
23	〈협약체결시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사항〉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생 략)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35	〈협약체결시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사항(제9조제1항)〉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생 략)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예: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 등) - 3책 5공에 관한 사항 ○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사항 안내 - 연구비 부정 집행과 연구윤리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 17.5.8.) 반영 -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사항 예시 및 3책 5공에 관한 사항 안내 - 연구윤리 의식 제고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규정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항에 대하여 협약 시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안내함 - 사업 또는 과제에 따라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인지해야하는 관련 법규를 추가로 보완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책임자를 비롯한 공동연구과제, 위탁과제의 연구참여자 모두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	과 의무사항을 모든 참여 연구원에게 안내
	(신 설)	36	**국가연구개발 수행 시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안내**(예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그 외 관련 법규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 등) 방지 노력 (제30조) – 연구비 사용 규정의 준수 (제12조의2) –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행위의 금지 (제12조의3) –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른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제29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제24조부터 제24조의10까지) – 연구윤리, 연구실 안전, 연구보안, 연구노트, 연구개발비 집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등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이수 (제33조) • 연구실의 안전 유지와 관리, 사고예방 노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연구실 안전에 관한 법률의 준수 • 인간과 관련된 연구 수행 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준수 • 동물과 관련된 연구 수행 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준수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에서 발생한 연구비의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나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형법」 상의 수사의뢰, 형사고발과 형사 처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 설)	37	○ 단독연구 시 참여연구원의 직무발명 승계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사전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이나 근무규칙을 마련하여 소속 연구원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이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동연구 시 참여연구원의 직무발명 승계 - 복수의 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복수의 기관 연구원이 공동으로 특허권 등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각 기관은 사전에 소속 연구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이나 근무규칙을 마련하여 소속 연구원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승계 받고, 국가연구개발성과의 귀속에 관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기관이 최종적으로 승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직무발명 승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분쟁가능성 차단
24	**2. 협약 변경(공동관리규정 제10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검토·승인 절차를 거쳐 이를 과제에 반영함 - (신 설) - (신 설) <협약 변경 서류 표준화(안)>	39	**2. 협약 변경(공동관리규정 제10조)** ○ 중앙행정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 -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은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 (삭 제)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5.8.24.) 반영 - 공동관리규칙에 기 반영
28	**3. 협약 해약** - 협약해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	40~41	**3. 협약 해약** -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	- 협약 해약에 따른 참여연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 ※ (신 설) <협약 해약 사유 표준화(안)> (신 설)		지, 현장 실태조사 등 조치 ※ 필요 시 참여연구원의 의견청취 (삭 제) <협약 해약 사유(제11조제1항)> -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구원 피해 최소화 - 공동관리규정에 기 반영(제11조제1항) -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16.7.21.) 반영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td><td></td><td></td><td>○ 중앙행정기관은 다음의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참여제한을 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참여제한 할 수 있는 협약 해약 사유(제11조제1항)〉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 중앙행정기관은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함</td><td>-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 16.7.22.) 반영</td></tr>
<tr><td>30</td><td>제4절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개발비 지급(공동관리규정 제12조)
〈표5〉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table><tr><th>참여 기업수</th><th>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th><th>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th><th>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th></tr><tr><td>1개</td><td>중소기업</td><td>75% 이내</td><td>부담금액의 10% 이상</td></tr></table></td><td>42</td><td>제4절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개발비 지급(공동관리규정 제12조)
〈표6〉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별표 1의4]
<table><tr><th>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th><th>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th><th>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th></tr></table></td><td>-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 17.5.8.) 반영</td></tr>
</table>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31</td><td>
<table>
<tr><td></td><td>중견기업</td><td>60% 이내</td><td>부담금액의 13% 이상</td></tr>
<tr><td></td><td>대기업</td><td>50% 이내</td><td>부담금액의 15% 이상</td></tr>
<tr><td rowspan="3">2개</td><td>중소기업, 중소기업</td><td>75% 이내</td><td>부담금액의 10% 이상</td></tr>
<tr><td>중소기업, 중견기업</td><td>60% 이내</td><td>부담금액의 13% 이상</td></tr>
<tr><td>그 외</td><td>50% 이내</td><td>부담금액의 15% 이상</td></tr>
<tr><td rowspan="3">3개 이상</td><td>중소기업 2/3 이상</td><td>75% 이내</td><td>부담금액의 10% 이상</td></tr>
<tr><td>중견(중소)기업2/3 이상</td><td>60% 이내</td><td>부담금액의 13% 이상</td></tr>
<tr><td>그 외</td><td>50% 이내</td><td>부담금액의 15% 이상</td></tr>
</table>
■ 산업통상자원부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 주관연구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일 경우 정</td><td>43</td><td>
<table>
<tr><td></td><td>현금 부담 기준</td><td>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td></tr>
<tr><td>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td><td>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td><td>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td></tr>
</table>
■ 산업통상자원부 수행기관의 사업비 출연·부담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 산업통상</td><td>-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방송사업 관</td></tr>
</table>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
<td></td>
<td>
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연구개발비의 75% 이하이며, 참여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연도별 참여기업 부담금의 10% 이상임(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참여기업의 부담금액은 연구개발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임)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이 아닐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다음과 같음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table>
<tr><th>참여기업 수</th><th>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th><th>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th><th>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th></tr>
<tr><td rowspan="2">1개</td><td>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td><td>연도별 연구개발비의 75% 이하</td><td>연도별 부담금액의 10% 이상</td></tr>
<tr><td>대기업</td><td>연도별 연구개발비의 50% 이하</td><td>연도별 부담금액의 20% 이상</td></tr>
<tr><td rowspan="2">2개 이상</td><td>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td><td>연도별 연구개발비의 75% 이하</td><td>연도별 부담금액의 10% 이상</td></tr>
<tr><td>그 밖의 경우</td><td>연도별 연구개발비의 50% 이하</td><td>연도별 부담금액의 20% 이상</td></tr>
</table>
- 참여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이라도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td>
<td></td>
<td>
자원부고시 제2017-22호, 2017.2.16.)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민간부담금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수행기관의 사업비 출연·부담 기준>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중앙행정기관의 출연금 지원기준</th><th colspan="2">수행기관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th></tr>
<tr><th>원천기술형</th><th>혁신제품형</th><th>원천기술형</th><th>혁신제품형</th></tr>
<tr><td>대기업</td><td>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td><td>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td><td colspan="2">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상</td></tr>
<tr><td>중견기업</td><td>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td><td>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td><td colspan="2">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td></tr>
<tr><td>중소기업</td><td>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td><td>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td><td colspan="2">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40% 이상</td></tr>
<tr><td>그 외</td><td>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td><td>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td><td colspan="2">필요시 부담</td></tr>
</table>
-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산업, 그 밖에 원천기술형 또는 혁신제품형으로 과제유형이 분류되지 않는 사업 또는 과제의 경우에는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지원기준 및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td>
<td>련 내용 안내</td>
</tr>
</table>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td><td></td><td></td><td>
■ 미래창조과학부(ICT) 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 기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 제28조 관련)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table>
<tr><th>중소기업인 경우</th><th>중견기업인 경우</th><th>대기업인 경우</th><th>그 외의 경우</th></tr>
<tr><td>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td><td>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td><td>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td><td>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td></tr>
</table>
2.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table>
<tr><th>중소기업인 경우</th><th>중견기업인 경우</th><th>대기업인 경우</th><th>그 외의 경우</th></tr>
<tr><td>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td><td>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 이상</td><td>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td><td>필요시 부담</td></tr>
</table>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3. 바우처 사업 기준
<table>
<tr><th>출연금 등 지원기준</th><th>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기준</th></tr>
<tr><td>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60%</td><td>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td></tr>
</table>
</td><td></td></tr>
</table>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td><td></td><td></td><td>
<table>
<tr><td>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이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단,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마. 그 밖의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td><td>기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6.5%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5% 이상</td></tr>
</table>
※ 대기업의 출연금 지원금액은 해당 대기업의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로 한다.

■ 중소기업청 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9조, 중소기업청고시 제2016-32호, 2016.5.23. 및 관리지침)
- 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며, 민간부담금은 민간현금 및 민간현물로 구성
- 정부출연금은 전체사업비의 90%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별 공고문에 별도로 정함
< 2017년 주요 R&D 사업별 민간부담금 및 현금부담비율 안내 >
<table>
<tr><th></th><th>창업성장</th><th>일반</th><th>산학연 공정·품질</th><th>중견</th><th>구매조건부 (일반)</th><th>구매조건부 (민관공동)</th></tr>
<tr><td>정부 : 민간</td><td>80 : 20</td><td>65 : 35</td><td>75 : 25</td><td>50 : 50</td><td>65 : 35</td><td>75 : 25</td></tr>
<tr><td>현금부담비율</td><td>50%</td><td>60%</td><td>40%</td><td>40%</td><td>60%</td><td>60%</td></tr>
<tr><td>총사업비 중 현금비중</td><td>10%</td><td>21%</td><td>10%</td><td>20%</td><td>21%</td><td>15%</td></tr>
</table>
※ 위 표에서 정부출연금은 최대 비율, 민간부담금 및 현금부담비율은 최소 비율로 나타냄
- 민간부담금은 주관기관 등의 현금 및 현물 부담으로</td><td></td></tr>
</table>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구성하며,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으로 함(세부사업별 공고문에 별도로 정하고,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별로 부담할 수 있음) - 민간부담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가) 참여연구원이 수행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나)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비영리 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 현금 가능) 등 다)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시약·재료·연구시설·장비 등	
32~33	**2. 연구개발비 관리** **가. 연구개발비 관리기준** ○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현금 관리를 위해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 가능, 원금 보장,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해야 함 - (신 설) ○ 비영리법인은 ---------- 함 - 대학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매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를 조사·평가 실시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에 대해 2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함 - 이 경우 대학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는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평가 결과를 고려해야 함 - 참여제한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 조치를 받은 연구	45~46	**2. 연구개발비 관리** **가. 연구개발비 관리기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 사용 ○ 비영리법인은 ---------- 함 - (삭 제) ○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은 2년 마다 고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 (삭 제) - (삭 제)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17.5.8.) 반영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제도 폐지 - 간접비 산출방식 변경사항 반영(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폐지 및 실소요 원가계산 방식의 간접비 산출방식 도입)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책임자 또는 연구기관이 있을 경우 이를 해당 연구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함 ○ (신 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함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제12조의4)>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연구비 관리시스템과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정보 표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및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함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7.5.8.) 반영
32	**나. 연구개발비 사용** <연구개발비 변경의 승인사항> - 건당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만 해당)	46	**나. 연구개발비 사용** <연구개발비 변경의 승인사항(제12조의2의제3항)> - 건당 3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7.5.8.) 반영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32	○ 정부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연구성과의 창출지원·보호·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사용가능하고, 그 밖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사업에서 정한 시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 미래창조과학부 ----------. - (신 설) - 산업통상자원부 ----------.		는 경우 - (삭 제) ○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미래창조과학부 ----------.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의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 및 과제는 정한 기한 내에 연구비 집행 내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비영리기관: 집행 후 3일 이내, 영리기관: 연구비 집행내역 입력 후 연구비를 집행) - 산업통상자원부 ----------.	- 미래창조과학부(ICT)분야 연구개발비 사용시스템의 상이한 내용 반영
36	**제5절 연구개발비 정산** **1. 연구개발비 정산절차(공동관리규정 제19조)**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 (신 설) -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해	48	**제5절 연구개발비 정산** **1. 연구개발비 정산절차(공동관리규정 제19조)** ○ 주관연구기관은 ----------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보고해야 함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의 정산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 실무적으로 전문기관에 보고하는 상황 반영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7.5.8.) 반영 - 외부 위탁정산을 실시하는 부처 안내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야 함 - (생 략)	49~50	이내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해야 함 - (생 략)	
	○ (신 설)		○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 또는 연구비 관리 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을 수 있으나,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함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5.8.24.) 반영 및 연구비 관리 체계평가 도입에 따른 사항 반영
	○ (신 설)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NTIS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NTIS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5.8.24.) 반영
	○ (신 설)		○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5.8.24.) 반영
	- 미래창조과학부 - 농림축산식품부 - (신 설)		■ 미래창조과학부 ■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밀정산은 현장실사를 포함함 <환경부 정밀정산 대상과제> • 연차 또는 단계평가, 현장평가 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 •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평가된 과제 •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 제재조치 검토 대상 과제 • 정산 결과 총 연구개발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 외로 집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과제 •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미래부, 농림부 및 환경부 예시 안내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37	**2.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공동관리규정 제19조)** ○ 집행잔액의 회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후에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금액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함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잔액을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해야 하며, 반납내역과 증빙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반납통보 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 3개월, 산업통상자원부 1개월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잔액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신 설)	51	**2.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공동관리규정 제19조)** ○ 중앙행정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은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함 ○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아래 제외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는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후속 연구개발에 사용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회수 제외요건(제17조제3항)> -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과제 -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함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5.8.24.) 반영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5.8.24.) 반영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 중앙행정기관은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함	
38	제6절 결과보고 및 평가 1. 연구개발결과 보고(공동관리규정 제15조) 가. 최종결과 보고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은 후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 보건복지부는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청은 협약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 -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 (신 설)	52	제6절 성과 보고 및 평가 1. 연구개발성과 보고(공동관리규정 제15조) 가. 연구개발 최종보고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삭 제)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5조제2항)> -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성과 -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 NTIS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 주관연구기관은 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연구개발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5.8.24.) 반영 - 일부부처 사항 삭제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7.5.8.) 반영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과제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받으면 문서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은 작성한 문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위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록 1-1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p. 246) 서식 참조	('15.8.24.) 반영
38 ~ 39	**나. 사업결과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는 연차보고를 당해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제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단계협약보고를 단계종료 45일 전까지 제출 (신 설)	52 53	**나. 사업결과 보고** (삭 제) (삭 제) **다. 계속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급 절차** ○ 연차연구 시작 시점의 연구개발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함 <그림 7> 계속사업의 사업연속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신속지원 - 연구개발비 적기 지급을 위해 연차종료 전 연차점검 또는 평가완료(권고사항)	- 일부 부처 사항 삭제 - 연차연구 시작시점에 연구비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안내 및 평가완료 권고
39	**2. 연구개발결과 평가(공동관리규정 제16조)** (신 설)	54	**2. 연구개발성과 평가(공동관리규정 제16조)** ○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평가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중간모니터링*으로 대체 *전년도 목표 달성과 수행내용에 대한 항목위주로 결과보고서를 간략히 작성하여 전문가 컨설팅(3인 내외) 실시	- 연차평가 제도 변화에 따른 사항 안내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 단계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 전문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연차평가와 중간모니터링 중 선택하여 중간평가 수행 - 단계협약 체결 과제의 경우, 단계가 종료되는 해에 단계평가를 수행하고, 단계평가 사이에는 중간모니터링 실시	
	(신 설)		○ 과제 착수 시점이 1년 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연차평가 폐지 <그림 8> 과제 착수 1년 미만과제의 연차평가 폐지(예시) 	
41	3. 연구개발결과 평가에 따른 조치(공동관리규정 제17조) (신 설) ○ 평가결과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음 - 불성실 수행 과제는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제재 조치	56 57	3. 연구개발성과 평가에 따른 조치(공동관리규정 제17조) ○ 중앙행정기관은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알려야 함 ○ 평가결과 연구개발성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4.11.28.) 반영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 중앙행정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 할 수 있음	
42	4. 연구개발결과의 공개(공동관리규정 제18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기간 동안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연구개발결과 공개 예외의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 (신 설)	57	4. 연구개발성과의 공개(공동관리규정 제18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조치함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경우 및 기간(제18조제4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NTIS 제공항목과 다음의 경우에 대한 성과정보 비공개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서 정함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5.8.24.) 반영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7.5.8.) 반영
46	제8절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촉진 1.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공동관리규정 제20조)	62	제8절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1.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공동관리규정 제20조)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4.11.28.) 반영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소유		○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 -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 가능	
46	○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삭 제)	
	(신 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5.8.24.) 반영
48	**2. 참여기업 실시원칙 및 접근권 허용(공동관리규정 제21조)** <참여기업 외의 자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	63	**2. 참여기업의 실시원칙 및 접근권 허용(공동관리규정 제21조)** <참여기업 외의 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제21조제2항)> -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5.8.24) 반영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9	5. 기술실시계약의 체결(공동관리규정 제21조) -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 (신 설) (신 설)	65	5. 기술실시계약의 체결(공동관리규정 제21조) -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 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6.7.22.) 반영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5.8.24) 반영
50	제9절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1. 개요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부정, 연구비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67	제9절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1. 개요(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의 연구결과 불량, 연구내용 누설·유출, 연구비 부정사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소관 중앙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사항 (15.12.22.) 반영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제한할 수 있으며, 기 출연한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개요> - (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연구내용 표절, 누설 등의 행위를 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 - (제재 내용) 국가R&D사업 5년 이내 참여 제한 및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 (제재 사유) •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된 경우 • 연구내용을 국내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 R&D과제를 포기한 경우 • 기술료 미납 • 용도외 연구비 사용 •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연구 부정(위조, 변조, 표절 등) • 그 밖에 국가R&D 부적합 수행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추후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개요(제11조의2 제1항, 제7항)> - (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아래의 제재 사유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자 - (제재 내용) 5년 내에서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내의 범위까지 가능),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가능 - (제재 사유) • 결과 불량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중단·실패 과제로 평가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 미납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로서의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하게 연구수행을 한 경우 •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51	**2.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절차** <그림7>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절차	67	**2.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절차** <그림7>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절차	- 부처별 각 이의신청 기간 개정으로 기간 비 명시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51	**3.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가. 참여제한 기간 및 경감**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중복위반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 가능함 (신 설) (신 설)	69	**3.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기준(공동관리규정 제27조)** **가. 참여제한 기간 및 경감**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중복위반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5년 이내(과거에 이미 동일한 사유로 참여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내의 범위까지 가능)참여제한 기간을 합산 가능함 ○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 〈표 9〉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 및 참여제한 기간[별표 4의2]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 16.7.22.) 반영
52~56	**나. 사업비 환수 기준 및 감액**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 표준화(안)〉 (신 설)	71	**나. 사업비 환수 기준 및 감액** (삭 제) 〈표 10〉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27조제11항 관련) [별표 5]	- 공동관리규정에 기 반영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 16.7.22.) 반영
57	**5. 제재부가금 부과(공동관리규정 제27조)** 〈표 8〉 용도 외 사용금액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율	72	**5. 제재부가금 부과·징수(공동관리규정 제27조의4)** 〈표 11〉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 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율 ○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 11〉에 따라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 15.12.22.) 반영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 제재부가금 부과율 1억 원 이전 / 20%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전 / 40% 2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전 / 60% 5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전 / 80% 100억 원 이상 / 100% (신 설)		연구용도 외 사용 금액 /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 20억7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음 -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 출연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 11>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음 - 공동관리규정 제16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전문기관 등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조사 과정 중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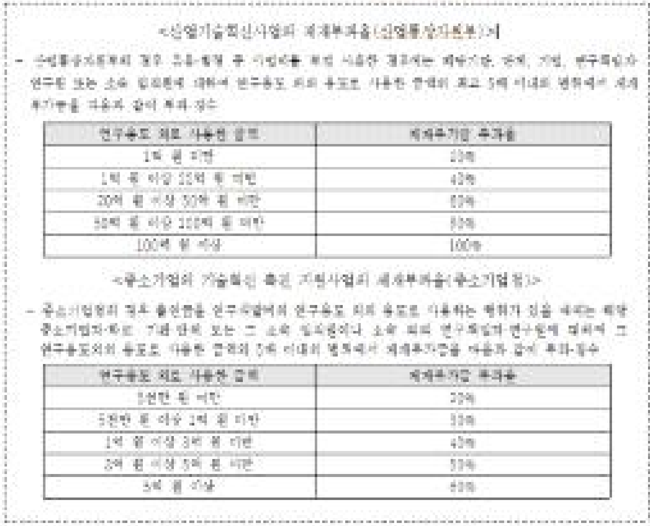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제재부과율(산업통상자원부)>
- [illegible]
<table><tr><th>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th><th>제재부가금 부과율</th></tr><tr><td>1억 원 미만</td><td>20%</td></tr><tr><td>1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td><td>40%</td></tr><tr><td>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td><td>60%</td></tr><tr><td>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td><td>80%</td></tr><tr><td>100억 원 이상</td><td>100%</td></tr></table><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제재부과율(중소기업청)>
- [illegible]
<table><tr><th>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th><th>제재부가금 부과율</th></tr><tr><td>5천만 원 미만</td><td>20%</td></tr><tr><td>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td><td>30%</td></tr><tr><td>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td><td>40%</td></tr><tr><td>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td><td>50%</td></tr><tr><td>5억 원 이상</td><td>60%</td></tr></table></td><td></td><td>(삭 제)</td><td>- 제재부가금 기준 표준화 반영</td></tr>
<tr><td>58</td><td>제10절 연구시설 및 장비
1. 개요
○ 연구시설・장비는 전주기 관리단계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13.3, 미래부)에서 정의하고 있음

기획 ⇨ 도입 ⇨ 등록 ⇨ 활용 ⇨ 운영 ⇨ 관리 ⇨ 처분</td><td>73</td><td>제10절 연구시설 및 장비
1. 개요
○ 연구시설・장비는 전주기 관리단계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및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음

기획 ⇨ 심의 ⇨ 구축 ⇨ 운영 ⇨ 활용 ⇨ 처분</td><td>-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정('16.5.4.)에 따른 사항 반영</td></tr>
<tr><td>58</td><td>2. 연구시설・장비 기획・도입・등록(공동관리규정 제7조, 제19조, 제25조)
(신 설)</td><td>73</td><td>2. 연구시설・장비 기획・도입・등록(공동관리규정 제25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의 목적과의 부합성, 국가전략의 필요성, 시설장비의</td><td>-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사항 반영</td></tr>
</table>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신 설)		중복성·활용성·적정성, 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집적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축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함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시설장비는 시설장비심의요청서(지침 별표 2)를 또는 1억 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시설장비는 시설장비심의요청서(지침 별표 3)를 작성하여 제출 - 5억 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시설장비의 경우 시설장비심의요청서 및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평가단에 제출 <사전기획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지침 제7조제3항)> - 구축 시설장비와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목적과의 부합성 - 해당 시설장비의 국내외 구축현황 및 기존 시설장비와의 차별성 - 해당 시설장비의 구축방법 및 구축비용의 적정성과 구축부지 확보, 구축성공 가능성 등의 추가 고려사항 - 구축 시설장비의 활용도 및 운영·활용계획(운영비용 등) - 시설장비의 투자효과	
58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사항 이며, 1억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미래부)와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각 부처)에서 심의를 실시함	73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위탁연구사업 중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시설장비 구축계획이 포함될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함 ※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전문생산연구소의 기본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위탁연구사업 추진 시에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시설장비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협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장비, 심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사항 반영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74	일자 등 심의결과를 ZEUS에 입력하여야 함 ※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 연구기관은 이미 구축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 및 연구기관 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와 3천만 원 이상의 시설장비의 활용·처분 등을 위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연구기관 기본사업으로 구축하려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시설장비에 대한 심의 신청사유의 적정성 및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지침 제6조제3항)> - 연구기관 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시설장비 - 연구기관에 이미 구축된 3천만 원 이상 시설장비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시설장비의 심의 결과를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ZEUS에 입력하여야 함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 원 이상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심의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td><td></td><td>75</td><td>
<〈심의평가단 심의 대상(지침 제9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 원 이상 시설장비의 도입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총구축비용 1억 원 이상인 시설장비 중 정부출연금이 1억 원 이상 투입되거나, 정부출연금 비중이 50% 이상인 시설장비
- 소프트웨어의 경우 시설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심의대상이며, 시설장비와 상관없이 별도로 쓰이는 소프트웨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시설장비 구축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표 12〉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구분
<table>
<tr><th>구분</th><th>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th><th>연구개발과제 평가단</th><th>자체장비심의위원회</th></tr>
<tr><td>주최
(주관)</td><td>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td><td>중앙행정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td><td>주관연구기관</td></tr>
<tr><td>심사범위</td><td>전 부처</td><td>해당 부처</td><td>해당 연구기관</td></tr>
</table>

단계별 사업별 심의위원회 승인사항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정부R&D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장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구성·운영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을 통해 심의하며, 심의 관련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별도로 정함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정부R&D예산이 편성된 이후, 부처별로 실시하는 과제 선정 및 수행 과정에서 구축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장비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심의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의 대행이 가능함
–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정부R&D예산으로 연구장비를 도입하려는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심의함

1)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td><td></td></tr>
</table>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td><td></td><td></td><td>
<표 13> 단계별 장비금액별 심의승인 사항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순수 연구 개발 사업1)</th><th>시설·장비 구축사업2)</th><th>연구기관지원사업3)</th></tr>
<tr><td rowspan="6">도입 단계</td><td colspan="2">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연구장비</td><td colspan="2">해당 부처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4) 승인 사항</td><td>해당 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승인 사항</td></tr>
<tr><td rowspan="3">1억 원 이상 연구장비</td><td>예산편성 시점에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장비</td><td colspan="3">‘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본심의)’ 승인 사항
※ 연구기관지원사업은 해당 기관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통과 후 안건 상정</td></tr>
<tr><td>예산집행 시점에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장비</td><td colspan="2" rowspan="2">‘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승인 사항</td><td rowspan="2">‘국가연구 시설·장비심의평가단’ (추가/변경심의)’ 승인 사항
※ 해당 기관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통과 후 안건 상정</td></tr>
<tr><td>‘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심의통과 장비 중 변경(금액변경, 장비변경, 구축포기)이 필요한 장비</td></tr>
<tr><td rowspan="2">활용 단계</td><td rowspan="5">3천만 원 이상 연구장비</td><td>단독활용장비의 판정 및 해제</td><td colspan="3" rowspan="5">해당 기관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승인 사항</td></tr>
<tr><td>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선정 및 해제</td></tr>
<tr><td rowspan="3">처분 단계</td><td>저활용·유휴·불용 장비에 대한 판정</td></tr>
<tr><td>저활용·유휴 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td></tr>
<tr><td>불용 장비에 대한 처분 결정</td></tr>
</table>
지원하는 사업
2) 자본적 지출(토지·건물 등의 시설과 대형기기·장비 등의 구축)
</td><td></td></tr>
</table>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사업 3) 국공립 연구기관, 부처 직할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출연금)과 부·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 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의거하여 구성·운영되는 평가단	
59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nfec. ntis.go.kr)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76	○ 주관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nfec. ntis.go.kr)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은 취득한 연구기설·장비를 NTIS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함	
60	**3. 연구시설·장비활용·운영관리·처분(공동관리규정 제25조)** (신 설)	77	**3. 연구시설·장비 활용·운영관리·처분(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연구기관은 ZEUS(또는 NTIS)에 등록된 시설정비 정보가 변동된 경우 즉시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함 - 지원기관은 ZEUS(또는 NTIS)에 등록된 시설장비 정보의 변경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하여야 함 ○ 연구기관은 시설장비책임관을 지정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시설장비책임관의 업무(지침 제26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사항 반영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이행 여부 등의 점검 - ZEUS(또는 NTIS)의 시설장비 정보 등록 및 변경 여부 점검 - 저활용·유휴·불용 시설장비의 재배치 및 처분에 대한 관리·감독 - 연구기관 보유 시설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 연구기관 보유 시설장비의 활용실적 관리 등의 점검 - 공동활용 시설장비에 대한 운영관리 및 이용료 수입·지출 관리 등의 점검 - 기타 연구기관 보유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연구기관은 시설장비에 대한 소모품 및 부분품의 정기적인 교체, 고장수리 등 유지보수 이력을 유지보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61	○ 주관연구기관은 장비상태 변경시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의 내구성, 활용상태, 사용빈도 등에 따라 유휴·저활용·불용을 판정하고 절차에 따라 장비의 자산 이관도 처리 결정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휴·저활용 장비 중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고 본래 기능을 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 다른 기관에 이전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요 조사를 통해 이전을 권장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유휴·저활용장비를 다른 기관에 이전 시 해당 장비 정보를 NTIS에 반드시 공고하여야 함 - 120일 이상의 공고기간 동안 수요가 없는 경우 불	78	○ 연구기관은 연 1회 이상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유한 시설장비의 활용 상태를 주기적으로 판정하여 재배치(기관 내 재배치, 타 기관 대여 등)하거나 해당 시설장비의 활용 상태를 전환하고, 불용 시설장비는 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 - 연구기관은 활용상태가 유휴·저활용·불용으로 판정된 시설장비는 30일 이내에 ZEUS(또는 NTIS)에 등록하여야 함 ○ 연구기관은 소관 시설장비를 시설장비 처분 유형(지침 별표 8)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ZEUS에 공고하여야 함 - 공고결과 유효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30일 이상 ZEUS에 재공고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사항 반영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61</td><td>용처리에 대한 기관자체기준에 근거하여 이전 또는 처분 가능함
- 공고기간 후 기관 자체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의 특성과 이전요청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전 승인여부 및 해당 장비의 활용도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야 함

〈표 11〉 불용처리의 유형 및 방법
<table><tr><th>구 분</th><th>내 용</th></tr><tr><td>양 여</td><td>○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원칙
○ 양여의 추진 시 양수기관의 사용자 및 사용처, 장비의 설치장소의 적절성, 활용수요의 적절성, 매각 및 재양여 여부(원칙적으로 불가) 등 양여타당성을 충분히 검토</td></tr><tr><td>대 여</td><td>○ 관련기관 등에 대여하는 자산으로 사용기관에서 비용을 부담</td></tr><tr><td>재활용
(해체)</td><td>○ 자산을 분해하여 재료 또는 부품의 일부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부품을 신청한 소속기관 부서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잔여분은 매각 또는 폐기</td></tr></table></td><td></td><td>-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중인 연구책임자 이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연구기관 변경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ZEUS를 통한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

○ 처분대상 시설장비는 무상양여, 해체 후 부품·재료 재활용, 매각, 폐기 순으로 처분하여야 함
- 양도기관의 장 및 양수기관의 장은 무상양여가 완료된 경우에는 ZEUS(또는 NTIS)에 관련 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함
- 불용 시설장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개매각을 하여야 하고,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운영유지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표 14〉 시설장비 처분 유형 및 방법(지침 별표 8)
<table><tr><th>구 분</th><th>내 용</th></tr><tr><td>무 상
양 여</td><td>○ 시설장비 보유기관이 시설장비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 양여의 추진 시 양수기관의 사용자 및 사용처, 시설장비의 설치장소의 적절성, 활용 수요의 적절성, 매각 및 재양여 여부(원칙적으로 불가) 등 양여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td></tr><tr><td>해체</td><td>○ 시설장비를 해체하여 부품 또는 재료의 일부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부품 또는 재료를 신청한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
※ 해체 후 잔여분은 보유기관에서 폐기</td></tr><tr><td>매 각</td><td>○ 시설장비 보유기관이 사용가능한 시설장비의</td></tr></table></td><td></td></tr>
</table>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매 각		소유권을 타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 매각이 원칙 ※ 거래실례가격이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정한 예정가격을 책정하여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의해 효율적인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매 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 매각이 원칙 ○ 매각 시 거래실례가격 적용 및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예정가격을 책정하여 효율적인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폐 기		폐 기	
	폐 기 ○ 2차 이상의 양여, 대여, 재활용, 공개매각 절차를 취하였어도 매수자가 없는 경우 폐기 ○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폐기 ○ 폐기하는 것이 연구원에 유리하거나 폐기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기		폐 기 ○ 무상양여, 해체, 매각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였어도 처분되지 않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연구원에 유리하거나 폐기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폐기 시에는 소각, 매몰, 수장(水葬), 분쇄, 대형폐기물 배출처리, 고물처리 등의 방법에 대한 불용품폐기조서 등을 작성	
제4장 기타 연구관리 제도				
63	**제1절 연구비관리** **1. 연구수행 단계별 연구비 관리** <연구비 관리의 기본원칙> - (연구비 계상의 정확성) 당초 연구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 후 필요 연구비를 정확히 계상 -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 - (연구비 집행기간의 적합성) 연구비는 협약 연구기간 내에 집행함이 원칙 - (증명자료의 객관성) 연구비 집행은 객관적인 서류(지출결의서, 영수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구비를 통해 증명 ※ 증명자료는 <u>당해과제</u> 연구종료일로 부터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함	79	**제1절 연구비관리** **1. 연구수행 단계별 연구비 관리** <연구비 관리의 기본원칙> - (연구비 계상의 정확성) 당초 연구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 후 필요 연구비를 정확히 계상 -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 - (연구비 집행기간의 적합성) 연구비는 협약 연구기간 내에 집행함이 원칙 - (증명자료의 객관성) 연구비 집행은 객관적인 서류(지출결의서, 영수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구비를 통해 증명 ※ 증명자료는 <u>해당 과제</u> 연구종료일로 부터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함	- 정확한 용어로 변경
65	**가. 연구비 관리 절차 개요**	81	**가. 연구비 관리 절차 개요**	- 부처에서 연구비 정산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그림 10> 연구비 관리 절차 		<그림 12> 연구비 관리 절차 	등을 직접하는 경우도 명시
65	**나. 연구비 지급(공동관리규정 제12조)** **연구비 출연기준**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비 출연·부담 기준은 <표 5>와 같음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하여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음	81	**나. 연구비 지급(공동관리규정 제12조)** **연구비 출연기준**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비 출연·부담 기준은 <표 6>과 같음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17.5.8.) 반영
66	**연구비 지급** -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자체정산 결과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음	82	**연구비 지급** -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정산하는 경우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사항(’17.2.23.)반영
66	**다. 연구비 사용(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82	**다. 연구비 사용(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중앙행정기관 승인사항> - 건당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이상 늘리려는 경우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 학생인건비를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제12조의 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해당한다)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승인사항> -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이상 늘리려는 경우 - (삭 제)	(’ 17.5.8.) 반영
67	**연구비 관리** ○ 연구개발비는 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해야 함	83	**연구비 관리** ○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집행하여야 함 -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음 • 간접비 • 직접비 중 인건비 •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 (’ 17.5.8.) 반영
68	**라. 연구비 정산(공동관리규정 제19조)**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중 략)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비의 10% 이내로 정하여 사용하게 하는 연구과제추진비의 경우 정산을 면제	84	**라. 연구비 정산(공동관리규정 제19조)**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중 략)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비의 10% 이내로 정하여 사용하게 하는 연구과제추진비의 경우 정산 면제 가능	-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사항(’ 17.2.23.)반영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td><td>(신 설)</td><td></td><td>-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는 정산 면제 가능</td><td></td></tr>
<tr><td>68</td><td>3.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 시 제출서류
가. 부당집행 공통기준

<부당집행 공통기준>
(중략)
-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

-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다만,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
-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td><td>85</td><td>3.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 시 제출서류
가. 부당집행 공통기준

<부당집행 공통기준>
(중략)
-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 및 제12조의3 제1항의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
-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다만,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
-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td><td>-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사항(’ 17.2.23.)반영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7.5.8.) 반영</td></tr>
<tr><td>69</td><td>나.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 시 제출서류
인건비

<표 13> 인건비 정의
<table><tr><th>구 분</th><th>정 의</th></tr><tr><td>외부
인건비</td><td>•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td></tr></table></td><td>85</td><td>나.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 시 제출서류
인건비

<표 16> 인건비 정의
<table><tr><th>구 분</th><th>정 의</th></tr><tr><td>외부
인건비</td><td>•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td></tr></table></td><td>- 정부R&D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방안(안) (‘16.10.31, 국과심 운영위) 개정사항 반영</td></tr>
</table>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td><td>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td><td></td><td>인건비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td><td></td></tr>
<tr><td>69</td><td>○ (계상기준)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td><td>86</td><td>○ (계상기준)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td><td>-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사항(’17.2.23.)반영</td></tr>
<tr><td>69</td><td><표 14> 인건비 산정기준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세 부 산 정 내 용</th></tr><tr><td rowspan="2">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 연구기관</td><td>연봉제 적용기관</td><td>•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td></tr><tr><td>연봉제 미적용기관</td><td>•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td></tr><tr><td colspan="2">기타기관</td><td>•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td></tr></table>(신 설)</td><td>86</td><td><표 17> 인건비 산정기준
<table><tr><th>구 분</th><th>세 부 산 정 내 용</th></tr><tr><td>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td><td>• 급여총액* × 참여율
–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td></tr><tr><td>기타기관</td><td>•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td></tr></table>*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td><td></td></tr>
</table>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td><td></td><td></td><td>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td><td></td></tr>
<tr><td>70</td><td>-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신 설)

(신 설)</td><td>86</td><td>•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경우 현물 또는 현금 미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단,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는 수입 여부와 관계 없이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구기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td><td>- 정부R&D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방안(안) (’16.10.31, 국과심 운영위) 개정사항 반영</td></tr>
<tr><td>70</td><td><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경우>
(중 략)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산업기술혁신사업(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 연구원까지 현금계상 인정(「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5조 제8항 제1호)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td><td>86</td><td><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경우>
(중 략)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삭 제)

– 그 밖에 중견기업 육성정책 및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td><td>-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사항(’17.2.23.)반영</td></tr>
<tr><td>70</td><td><표 15>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table><tr><th>구 분</th><th>부당집행 기준</th></tr><tr><td>공통</td><td>①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td></tr></table></td><td>87</td><td><표 18> 인건비 부당집행 기준
<table><tr><th>구 분</th><th>부당집행 기준</th></tr><tr><td>공통</td><td>①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td></tr></table></td><td>-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사항(’17.2.23.)반영</td></tr>
</table>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td><td>
<table>
<tr><th>구 분</th><th>부당집행 기준</th></tr>
<tr><td></td><td>②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③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④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td></tr>
<tr><td>내부
인건비</td><td>⑤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td></tr>
<tr><td>외부
인건비</td><td>⑥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⑦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⑧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신 설)
(신 설)
(신 설)</td></tr>
</table>
</td><td></td><td>
<table>
<tr><th>구 분</th><th>부당집행 기준</th></tr>
<tr><td></td><td>②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③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④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td></tr>
<tr><td>내부
인건비</td><td>⑤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td></tr>
<tr><td>외부
인건비</td><td>⑥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⑦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⑧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⑨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⑩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⑪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td></tr>
</table>
</td><td>-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사항(’17.2.23.)반영</td></tr>
<tr><td>70</td><td>
<table>
<tr><th colspan="2"><표 16> 연구비 정산시 제출서류</th></tr>
<tr><th>구 분</th><th>증 명 자 료</th></tr>
<tr><td>외부
인건비</td><td>① 근로계약서
②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③ 급여명세서(월별)
④ 계좌이체증명
⑤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신 설)
(신 설)</td></tr>
</table>
</td><td>87</td><td>
<table>
<tr><th colspan="2"><표 19> 인건비 정산시 제출서류</th></tr>
<tr><th>구 분</th><th>증 명 자 료</th></tr>
<tr><td>외부
인건비</td><td>①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td></tr>
</table>
</td><td>-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사항(’17.2.23.)반영</td></tr>
</table>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71	<감사원 지적사항(2013 국가R&D 감사백서)> - 일부 대학에서 연구 미참여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 - 연구원 참여율 관리 소홀로 인건비 과다 산정·지급 - 지원인력인 행정인력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인건비 비목으로 계상·집행한 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자체 정산하여 잉여 간접비가 지속적으로 발생		(삭 제)	-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사항('17.2.23.)반영
71	(신 설)	87~89	**학생인건비** ○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박사후 연구원 포함) * 학사·석사·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 ※ 출연(연) 등의 경우 학·연 협동과정을 수행 중인 학생연구원 및 대학(원)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 (계상기준)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은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 •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사항('17.2.23.)반영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td><td></td><td></td><td>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
-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지급기준*(참여율 100% 기준)
* 학사과정 :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 : 250만원, 박사후연구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학생인건비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참고)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 연구책임자-학생연구원 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연구참여확약서

1. 학생연구원 인적사항
<table>
<tr><td>성 명</td><td></td><td>학 번</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소 속
(학과명)</td><td></td><td>과정 및 학기</td><td colspan="3">( ) 과정 ( ) 학기</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2">(휴대전화번호)</td><td colspan="3">(E-mail)</td></tr>
</table>
2. 참여정보
가. 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다. 월 참여율 : %
라. 학생인건비 지급액 : 월 원(세금 포함)
마. 연구책임자
<table>
<tr><td>성 명</td><td colspan="3"></td></tr>
<tr><td>소 속
(학과명)</td><td></td><td>직 급</td><td></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3">(연구실) (E-mail)</td></tr>
</table>
위와 같이 학생연구원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키로 합의하며, 계정책임자는 이에 상응하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며 이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 기관장 귀하
</td><td></td></tr>
</table>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td><td></td><td></td><td>※ 유의사항
▪ 연구참여기간은 가능한 학기(6개월) 또는 년 단위로 설정을 권고함
▪ 학생연구원에게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학생연구원이 담당업무(역할)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정책임자는 동 확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동 서식은 필요시 연구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td><td></td></tr>
<tr><td>71</td><td>(신 설)</td><td>90</td><td><표 20> 학생인건비 부당집행 기준
<table><tr><th>구분</th><th>부당집행 기준</th></tr><tr><td>학생
인건
비</td><td>①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②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③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④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⑥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단,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이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지급 받은 인건비와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은 인건비는 제외)</td></tr></table></td><td>-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사항(’17.2.23.)반영</td></tr>
<tr><td>71</td><td>(신 설)</td><td>90</td><td><표 21> 학생인건비 정산시 제출서류
<table><tr><th>구 분</th><th>증 명 자 료</th></tr><tr><td>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기관</td><td>① 연구참여확약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창업 학생연구원에 한함)</td></tr></table></td><td>-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사항(’17.2.23.)반영</td></tr>
</table>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그 외 기관 ①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증명 ③ 연구참여확약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창업 학생연구원에 한함)	
71	**연구장비・재료비** ○ (정의)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 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제외) (신 설) (신 설) (신 설) - 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90	**연구장비・재료비** ○ (정의)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 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범용성 장비・소프트웨어는 원래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 ※ 범용성장비 : 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 범용성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 단, 개인용 컴퓨터 구입의 경우 비영리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인정하며, 영리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경우만 인정 - 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매입·조성비,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설계·건설·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	- 정부R&D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방안(안) ('16.10.31, 국과심 운영위) 개정사항 반영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 17.5.8.) 반영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td><td>-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td><td></td><td>-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td><td></td></tr>
<tr><td>71</td><td>○ (계상기준)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중 략)
*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연구비 관리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기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재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td><td>91</td><td>○ (계상기준)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중 략)
*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포털(ZEUS)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td><td>-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7.5.8.) 반영</td></tr>
<tr><td></td><td><<표 17> 연구장비·재료비 부당집행 기준
<table><tr><th>구 분</th><th>부당집행 기준</th></tr><tr><td>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td><td>(중 략)
③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④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중 략)</td></tr></table></td><td>91</td><td><<표 22> 연구장비·재료비 부당집행 기준
<table><tr><th>구 분</th><th>부당집행 기준</th></tr><tr><td>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td><td>(중 략)
③ 원래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단, 비영리 기관의 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제외
④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일)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중 략)</td></tr></table></td><td></td></tr>
</table>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td><td><table><tr><th>구 분</th><th>부당집행 기준</th></tr><tr><td>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td><td></td></tr><tr><td>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td><td>(중 략)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td></tr></table></td><td></td><td><table><tr><th>구 분</th><th>부당집행 기준</th></tr><tr><td></td><td></td></tr><tr><td>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td><td>(중 략)
② 원래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td></tr></table></td><td></td></tr>
<tr><td>72</td><td><감사원 지적사항(2013 국가R&D 감사백서)>
- 구입하지도 않은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연구비 횡령
- 타 과제에서 집행한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해당과제에서 집행한 것으로 증명서류를 이중으로 제출하거나 연구재료를 과다 구매 후 일부만 과제수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유용
- 5년 내지 10년 이상 연구에 활용 가능한 연구장비를 재활용하지 않고, 단순보유 · 방치</td><td></td><td>(삭 제)</td><td>-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사항(’ 17.2.23) 반영</td></tr>
<tr><td></td><td>연구활동비
○ 정의
(중략)
- 전문가 활용비(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td><td>92</td><td>연구활동비
○ 정의
(중략)
- 전문가 활용비(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td><td>- 정부R&D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방안(안) (‘16.10.31, 국과심 운영위) 개정사항 반영</td></tr>
</table>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함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로서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의미한다.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7.5.8.) 반영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신 설)	93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 * 개발기술 관련특허를 심층 조사·분석하여 침해이슈 해결, 핵심·원천특허 확보, R&D 방향설정 등의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주로 ‘특허전략’으로 지칭됨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73</td><td><u><표 19></u> 부처별 연구활동비 공통항목 외 추가항목
<table><tr><th>부 처</th><th>공통항목 외 추가항목</th></tr><tr><td>중소
기업청</td><td>•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 회의비(장소 임대료, 음료·다과비 및 참여연구원 식대 등)
•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연구과제추진비 항목의 미신설</td></tr></table></td><td>93</td><td><u><표 24></u> 부처별 연구활동비 공통항목 외 추가항목
<table><tr><th>부 처</th><th>공통항목 외 추가항목</th></tr><tr><td>중소
기업청</td><td><u>(삭 제)</u>
<u>(삭 제)</u>
•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
<u>(삭 제)</u></td></tr></table></td><td>-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사항(’ 17.2.23) 반영</td></tr>
<tr><td>74</td><td>○ (계상기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u>- 국외 출장여비는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u>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td><td>93</td><td>○ (계상기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u>- 자체 여비규정이 있는데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의 여비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여비규정 내에 이중기준을 설정하여 여비를 과다 계상해서는 안 되며</u>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td><td>-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17. 3.)</td></tr>
<tr><td>74</td><td><u><표 20></u> 연구활동비 부당집행 기준
<table><tr><th>구 분</th><th>부당집행 기준</th></tr><tr><td><u>국외 출장여비</u></td><td>①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u>별도의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u>
② <u>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u>
③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td></tr></table></td><td>94</td><td><u><표 25></u> 연구활동비 부당집행 기준
<table><tr><th>구 분</th><th>부당집행 기준</th></tr><tr><td><u>출장 여비</u></td><td>①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u>별도의 여비기준을 이중으로 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u>
<u>(삭 제)</u>
②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td></tr></table></td><td>-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17. 3.)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 17.5.8.) 반영
-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사항(‘17.2.23) 반영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td></tr>
</table>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 17.5.8.) 반영
		④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⑤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③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④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 수집, 특허 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 (신 설) (신 설)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①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단,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1.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2.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 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연구원장, ○○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중 략) ④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중 략) ⑧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중 략) ④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중 략) ⑧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td><td>
<table>
<tr><th>구 분</th><th>부당집행 기준</th></tr>
<tr><td>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td><td></td></tr>
<tr><td>(신 설)</td><td></td></tr>
</table>
</td><td></td><td>
<table>
<tr><th>구 분</th><th>부당집행 기준</th></tr>
<tr><td>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td><td></td></tr>
<tr><td>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td><td>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td></tr>
</table>
</td><td></td></tr>
<tr><td>75</td><td>
<table>
<tr><th colspan="3"><표 21> 연구활동비 정산시 제출서류</th></tr>
<tr><th>구 분</th><th colspan="2">증 명 자 료</th></tr>
<tr><td rowspan="4">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td><td>국내외 전문가 활용비</td><td>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td></tr>
<tr><td>연구원의 국내외 교육 훈련비</td><td>① 내부결재문서
②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③ 교육수료증
④ 계좌이체증명(교육비 계좌입금증)</td></tr>
<tr><td>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td><td>① 내부결재문서
② 계좌이체증명</td></tr>
<tr><td>도서 등 정보자</td><td>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td></tr>
</table>
</td><td>95</td><td>
<table>
<tr><th colspan="3"><표 26> 연구활동비 정산시 제출서류</th></tr>
<tr><th>구 분</th><th colspan="2">증 명 자 료</th></tr>
<tr><td rowspan="6">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td><td>국내외 전문가 활용비</td><td>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td></tr>
<tr><td>연구원의 국내외 교육 훈련비</td><td>① 내부결재문서
②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③ 교육수료증
④ 계좌이체증명(교육비 계좌입금증)</td></tr>
<tr><td>기술정보 수집비</td><td>① 내부결재문서
② 계좌이체증명</td></tr>
<tr><td>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 구입비</td><td>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td></tr>
<tr><td>세미나</td><td>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td></tr>
</table>
</td><td>-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7.5.8.) 반영</td></tr>
</table>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td><td>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증 명 자 료</th></tr>
<tr><td rowspan="5">비 등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 수집,
특허정보 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td><td>료 문헌 구입비</td><td>② 거래명세서</td></tr>
<tr><td>세미나 개최비</td><td>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td></tr>
<tr><td>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td><td>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학회등록비 영수증</td></tr>
<tr><td>기술 도입비</td><td>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기술도입계약서
④ 기술검수조서 등</td></tr>
<tr><td>논문 게재비</td><td>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td></tr>
<tr><td>(신 설)</td><td></td><td></td></tr>
</table>
</td><td></td><td>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증 명 자 료</th></tr>
<tr><td rowspan="4">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td><td>개최비</td><td>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td></tr>
<tr><td>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td><td>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학회등록비 영수증</td></tr>
<tr><td>기술 도입비</td><td>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기술도입계약서
④ 기술검수조서 등</td></tr>
<tr><td>논문 게재비</td><td>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td></tr>
<tr><td>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td><td>특허 정보 조사비 등</td><td>① 내부결재문서
② 계좌이체증명</td></tr>
</table>
</td><td></td></tr>
<tr><td>75</td><td><감사원 지적사항(2013 국가R&D 감사백서)>
- 정부출연연구원과 국 · 공립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일부 연구원과 대학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의 여비 단가보다 높게 책정한 여비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국외 출장여비를 산정 · 집행</td><td></td><td>(삭 제)</td><td>-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사항(’17.2.23) 반영</td></tr>
<tr><td>76</td><td>연구과제추진비</td><td>96</td><td>연구과제추진비</td><td>-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td></tr>
</table>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td><td>○ 계상기준
(중 략)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
- 국내 출장여비는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td><td></td><td>○ 계상기준
(중 략)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
- 자체 여비규정이 있는데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의 여비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여비규정 내에 이중기준을 설정하여 여비를 과다 계상해서는 안 되며</td><td>개정 사항(’ 17.2.23) 반영
-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17. 3)</td></tr>
<tr><td>76</td><td><표 22> 연구과제추진비 부당집행 기준
<table><tr><th>구 분</th><th>부당집행 기준</th></tr><tr><td>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 교통비</td><td>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③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신 설)</td></tr></table></td><td>97</td><td><표 27> 연구과제추진비 부당집행 기준
<table><tr><th>구 분</th><th>부당집행 기준</th></tr><tr><td>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 교통비</td><td>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③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④ 수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이중으로 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td></tr></table></td><td>-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17. 3)</td></tr>
<tr><td>77</td><td><표 23> 연구과제추진비 정산시 제출서류
<table><tr><th>구 분</th><th>증 명 자 료</th></tr><tr><td>회의비</td><td>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td></tr></table></td><td>97</td><td><표 28> 연구과제추진비 정산시 제출서류
<table><tr><th>구 분</th><th>증 명 자 료</th></tr><tr><td>회의비</td><td>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도 지급신청 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은 명기
② 카드매출전표</td></tr></table></td><td></td></tr>
<tr><td>77</td><td><감사원 지적사항(2013 국가R&D 감사백서)>
- 초청자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td><td>95</td><td>(삭 제)</td><td>-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사항(’ 17.2.23) 반영</td></tr>
</table>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td><td>여비금액 중 그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중복으로 지급
- 연구원들의 회식비(주류대)로 부당하게 사용하고서도 기술정보활동비로 정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고</td><td></td><td></td><td></td></tr>
<tr><td>77</td><td>연구수당
-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11조)
- 중소기업청의 경우 비영리기관에 한해 계상 가능하도록 규정(「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 요령」 제21조)</td><td>98</td><td>연구수당
-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2)
- 중소기업청의 경우 비영리기관에 한해 계상 가능하도록 규정(「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 요령」 별표1)</td><td>- 산업부 규정 개정사항 반영

- 중기청 규정 개정사항 반영</td></tr>
<tr><td>78</td><td><표 24> 연구수당 부당집행 기준
<table><tr><th>구분</th><th>부당집행 기준</th></tr><tr><td>연구
수당</td><td>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③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④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지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⑤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신 설)</td></tr></table></td><td>98</td><td><표 29> 연구수당 부당집행 기준
<table><tr><th>구분</th><th>부당집행 기준</th></tr><tr><td>연구
수당</td><td>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③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④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지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⑤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⑥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td></tr></table></td><td>-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사항(’17.2.23) 반영</td></tr>
<tr><td>78</td><td>산업기술혁신사업(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실집행액 인건비의 20% 초과금액에 대해 불인정(「산업기술 개발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4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제11조 제12항)</td><td></td><td>(삭 제)</td><td>-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사항(’17.2.23) 반영</td></tr>
</table>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78</td><td><u><감사원 지적사항(2013 국가R&D 감사백서)></u>
<u>- 연구기관에서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과다계상한 후 실제로는 인건비를 축소 집행하여 잉여 인건비를 반납하고 연구수당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u>
<u>- 연구수당을 평가 없이 지급하거나 편성된 연구수당을 특정인에게 전액 지급한 경우에도 연구개발비 환수 또는 재분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u></td><td></td><td><u>(삭 제)</u></td><td>-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사항(’ 17.2.23) 반영</td></tr>
<tr><td>78</td><td>위탁연구개발비
○ (계상기준) <u>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u>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 내 계상</td><td>98</td><td>위탁연구개발비
○ (계상기준) <u>원칙적으로</u>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 내 계상</td><td>-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사항(’ 17.2.23) 반영</td></tr>
<tr><td>79</td><td><u><감사원 지적사항(2013 국가R&D 감사백서)></u>
<u>A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이 허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주관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한 기술개발결과 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전담기관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1차 연구를 “성공”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 연구결과 “실패”로 판정받아 2차 연구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을 낭비</u></td><td></td><td><u>(삭 제)</u></td><td>-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사항(’ 17.2.23) 반영</td></tr>
<tr><td>79</td><td>간접비
《간접비 계상기준》
<table><tr><th>기관구분</th><th>간 접 비</th><th>비 고</th></tr><tr><td>비영리기관
(간접비율 고시 기관)</td><td>직접비 × 고시비율 이내</td><td>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td></tr><tr><td>비영리기관
(간접비율 미고시 기관)</td><td>직접비 × 17% 이내</td><td></td></tr><tr><td>연구개발서비스업자*</td><td>직접비 × 10% 이내</td><td></td></tr><tr><td>영리법인**</td><td>직접비 × 5% 이내</td><td></td></tr><tr><td><u>(신 설)</u></td><td></td><td></td></tr></table></td><td>99</td><td>간접비
《간접비 계상기준》
<table><tr><th>기관구분</th><th>간 접 비</th><th>비 고</th></tr><tr><td>비영리기관
(간접비율 고시 기관)</td><td>좌동</td><td>좌동</td></tr><tr><td>비영리기관
(간접비율 미고시 기관)</td><td>좌동</td><td></td></tr><tr><td>연구개발서비스업자*</td><td>좌동</td><td></td></tr><tr><td>영리법인**</td><td>좌동</td><td></td></tr><tr><td>중소기업·중견기업
(중앵행정기관의 장 또는</td><td>직접비 × 10% 이내</td><td></td></tr></table></td><td>-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7.5.8.) 반영
-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사항(’ 17.2.23) 반영</td></tr>
</table>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td><td></td><td></td><td>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td><td></td></tr>
<tr><td>79</td><td>-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음
(신 설)

(신 설)

-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경비를 산정하여 계상</td><td>99</td><td>-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을 계상
-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 시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함(2017. 11. 9.부터 시행)
-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경비를 산정하여 계상</td><td>-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7.5.8.) 반영</td></tr>
<tr><td>80</td><td><표 29> 간접비 부당집행 기준
<table><tr><th>구분</th><th>부당집행 기준</th></tr><tr><td>간접비</td><td>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td></tr></table></td><td>100</td><td><표 34> 간접비 부당집행 기준
<table><tr><th>구분</th><th>부당집행 기준</th></tr><tr><td>간접비</td><td>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10%까지 계상·사용 가능)</td></tr></table></td><td>-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7.5.8.) 반영</td></tr>
<tr><td>80</td><td>* 산업기술혁신사업(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영리기관이 한도 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한 초과 집행금액은 예외로 함(「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4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td><td></td><td>(삭 제)</td><td>-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사항(’17.2.23) 반영</td></tr>
<tr><td>80</td><td><감사원 지적사항(2013 국가R&D 감사백서)></td><td></td><td>(삭 제)</td><td>-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td></tr>
</table>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 연구성과가 우수한 지 여부와 관련 없이 연구기간 중에 각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간접비의 일정 비율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어, 연구수행의 장려 및 보상을 위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제도의 도입 취지와 부합되지 않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 - 연구지원비(간접비) 예산을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단과대학 학장실, 서무행정실 등의 운영경비 명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 연구개발비 간접비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			개정 사항(’ 17.2.23) 반영
82~86	**제2절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1. 개요** ○ 개념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내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관리* *연구책임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정을 만들어 해당 계정에서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 집행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연구관리부서) 해당기관 소속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을 개설하여 통합 관리 ※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은 연구비 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각 과제 계정과 연동하여 수입·지출 및 지급내역 확인 등이 가능해야 함	102	**제2절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1. 개요** ○ 개념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내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관리 * 연구책임자 단위로 학생인건비 계정을 만들어 해당 계정에서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 집행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연구관리부서)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을 개설하여 통합 관리 ※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은 연구비 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각 과제 계정과 연동하여 수입·지출 및 지급내역 확인 등이 가능해야 함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7.5.8.) 반영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3) 학생인건비 지급 - (연구관리부서) 매월 ---------- 이체 ※ 과제별 학생인건비를 당초 계획 대비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 필요 ※ 학생인건비 지급 증빙자료를 학생인건비를 모두 소진한 후 5년간 기관내부 규정에 따라 보존		3) 학생인건비 지급 - (연구관리부서) 매월 ---------- 이체 (삭 제) ※ 학생인건비 지급 증빙자료를 학생인건비를 모두 소진한 후 5년간 기관내부 규정에 따라 보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1) 지정취소 요건 - 미래창조과학부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에 대하여 년 2회의 범위에서 점검하고,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확인된 기관에 대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 - (학생인건비 환수처분) 운영현황 점검일 전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 회수 및 공동 사용 관련 연구비 환수 처분을 받은 금액이 다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운영현황 점검일 전년도 1.1.부터 12.31.까지 지출한 학생인건비 총액이 10억 원 이하 : 2천만 원 • 운영현황 점검일 전년도 1.1.부터 12.31.까지 지출한 학생인건비 총액이 10억 원 초과 : 학생인건비 총액의 2%	10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1) 지정취소 요건 - 미래창조과학부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에 대하여 년 2회의 범위에서 점검하고,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확인된 기관에 대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 - (학생인건비 부당집행) 제재조치 결정통지(전년도 1.1.~12.31.)를 받은 소속 연구자가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에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 및 사용한 금액이 다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전년도 1.1.부터 12.31.까지 지정기관의 학생인건비 집행총액이 10억 원 이하 : 2천만 원 • 전년도 1.1.부터 12.31.까지 지정기관의 학생인건비 집행총액이 10억 원 초과 : 학생인건비 총액의 2%	- 의미 명확화
89	**제3절 기술료제도** **1. 개요**	107~109	**제3절 기술료제도** **1. 개요**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15.8.24.) 반영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 운영체제 - 기술료제도는 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실시의 대가를 징수하는 ① 기술료 징수, 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법인)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실시 또는 제3자 실시하여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에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납부하는 ② 기술료 납부, 다. (i) 중앙행정기관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국고 또는 기금에 산입하여 사용하거나, (ii)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참여연구원 보상금,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한 경비, 연구개발재투자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등에 직접 사용하는 ③ 기술료 사용으로 구분 〈그림 12〉 기술료제도 운영체제		◎ 운영체제 - 기술료제도는 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실시의 대가를 징수하는 ① 기술료 징수, 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법인)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실시 또는 제3자 실시하여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에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납부하는 ②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다. (i) 중앙행정기관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징수한 정부납부기술료를 국고 또는 기금에 산입하여 사용하거나, (ii)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참여연구원 보상금,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한 경비, 연구개발재투자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등에 직접 사용하는 ③ 기술료 사용으로 구분 〈그림 14〉 기술료제도 운영체제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90	**2. 기술료의 징수납부사용** **나. 기술료의 납부**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영리법인이 - 제3자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영리법인의 규모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40%(대기업), 30%(중견기업), 10%(중소기업)를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하고,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한 경우, (i) 정액기술료 방식에 따라 영리법인의 규모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40%(대기업), 30%(중견기업), 10%(중소기업)을 징수하거나,	110	**2. 기술료의 징수납부사용** **나.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영리법인이 - 제3자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영리법인의 규모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40%(대기업), 20%(중견기업), 10%(중소기업)를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토록 하고,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한 경우, (i) 정액기술료 방식에 따라 영리법인의 규모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40%(대기업), 20%(중견기업), 10%(중소기업)을 징수하거나,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 16.7.22.) 반영
90	**다. 기술료의 사용** ○ 비영리법인은		**다. 기술료의 사용** ○ 비영리법인은	-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 (’ 15.8.24.) 반영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 제3자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 중에서 지식재산경비(출원·등록·유지비 등)로 정부출연금 지분의 5%를 우선 적립·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 • 참여연구원 보상금 : 정부출연금 지분의 50% 이상 ~ 10%* • 기술이전·사업화 경비 : 정부출연금 지분의 10% 이상 • 나머지 금액 : 연구개발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경비(필요시), 기술이전 기여자보상금 등		- 제3자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 • 지식재산경비(출원·등록·유지비 등) : 정부출연금 지분의 5% 이상 • 참여연구원 보상금 : 정부출연금 지분의 50% 이상 • 기술이전·사업화 경비 : 정부출연금 지분의 10% 이상 • 나머지 금액 : 연구개발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경비(필요시), 기술이전 기여자보상금 등	
92	**제4절 보안관리** 1. 개요 ○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5(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7(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112	**제4절 보안관리** 1. 개요 ○ (삭 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7(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사항 (’15.12.22.) 반영
	(신 설)	124~126	**제5절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 5공)** 1. 개요 ○ 목적 -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의 수를 제한함 ○ 근거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2.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공동관리규정 제32조) ○ 개념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 국가R&D참여시 검토해야 하는 연구자 1인당 참여 과제제한(3책 5공) 안내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않음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107	부록 1 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 기준 표준화(안) (신 설)	130~132	부록 1 (삭 제) 부록 1 국가연구개발사업 서식 및 첨부서류 활용 가이드라인 부록 1-1 국가연구개발사업 서식 활용 가이드라인 추진배경 ○ 「정부R&D 혁신방안」 수립·추진 (과학기술전략회의, ’16.5.12.) - 불필요한 정부간섭과 행정부담을 대폭 줄이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양식 간소화 추진 <정부R&D 혁신방안> - 연구 주체별(산・학・연) 차별화된 연구양식·서식 마련 및 주요 서식 내 항목과 첨부서류를 대폭 축소 (1/4수준) - 연구계획서(100p이상) 작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념계획서(5p이내) 우선 평가방식 도입(타당성 인정 시 본계획서 평가) ○ ‘R&D 표준서식 간소화 방안’ 심의·의결 (국가과학	- 표준화(안)의 공동관리규정 반영 및 제도 정착으로 삭제 - 서식 간소화 방안 반영(정부R&D 혁신방안)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16.10.31.)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분량한정, 최종보고서 간소화,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한 서식 가이드라인 마련 및 첨부서류 관리 추진 등 내용 포함 ▶ 국가 R&D 서식 활용 방안 ○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연구과제 공고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에서 정한 서식을 활용토록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항목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약표 등 전체 구성을 동일하게 활용 ○ 연구개발비가 정부출연금 연 5억원 이하인 과제는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내용 본문을 5쪽 이내로, 연 5억 원 초과 과제는 10쪽 내외로 분량을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내용 본문 :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 다만, 기초연구과제 중 대형, 집단과제와 다수기관이 참여(컨소시엄 등)하거나 기술개발, 실용화 같은 응용·개발 연구과제 등 연구개발계획을 상세히 작성해야하는 불가피한 경우* 분량제한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음 * 그래프, 설계도, 도표 등 포함,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상세 비교가 필요한 경우 등 - 연구개발계획서는 연구내용 중심으로 작성하되 평가에 필요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기	- 사업 특성을 고려한 간소화 서식 적용 가이드라인 제시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초연구과제 중 소규모 자유공모 과제에 우선 적용하고 중견연구 등 사업은 10쪽 내외를 권고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관리 필요 ○ 연구개발사업 유형이나 연구개발 단계, 연구개발과제 제시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표준서식을 예외적으로 변형, 조정하여 적용 가능 - 아래는 예시일 뿐이며 반드시 그러해야하는 것은 아님. 연구개발서식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에서 핵심적으로 보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 - 연구단계별 서식 구성 고려사항 • 응용·개발 연구단계의 과제인 경우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에 지식재산권 및 표준화 현황, 연구기관현황에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그 외 사업화 계획(생산계획, 투자계획, 사업화 전력 등)도 추가 가능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수행능력을 판단하는데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연구실적을 작성토록 항목 구성 가능 - 공모방식에 따른 서식 구성 고려사항 • 지정공모(Top-Down)과제인 경우 제안요구서(RFP)에 연구개발의 필요성이나 목표 등 이미 내용이 제시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사람 간에 차별화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그 작성 항목을 신청용 연구개	

해당 페이지	기존(14년)	해당 페이지	개정(17년)	개정사유
			발계획서에서는 제외하는 등 활용 가능 - 사업성격별 서식 구성 고려사항 • 연구시설·장비 구축 관련 연구개발과제는 시설·장비 구축 계획 추가 가능 • 교육·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진학, 취학, 정규교과, 비정규프로그램, 교육기반 구축, 산학협력, 지역연계 등 인력 특성에 따른 인력 양성 계획 추가 가능 • 대학 산·학협력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는 산학협력 선도모델 비전(Vision), 체계(System), 구성요소(Component), 연결(Link)전략, 대학 구조개혁 실적 및 계획 등을 추가 가능 •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지역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는 지역산업 발전 계획(전문인력, 장비 및 시설, 프로그램, 협력 네트워크 등) 추가 가능 • 기반조성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는 기반구축 필요성, 구축전략, 경쟁력 확보전략, 자립화 전략 등을 추가 가능 - 연구형태에 따른 서식 구성 시 고려사항 • 소규모 연구그룹 육성·지원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기초연구실)는 연구그룹의 우수성, 연구실 설치·운영 계획 추가 가능 • 우수 연구집단 발굴·육성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선도연구센터(SRC, ERC, MRC))는 센터의 운영계획과 자립계획, 센터의 기반구축 및 설치대학의 지원 계획 추가 가능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td><td></td><td>133~
187</td><td>□「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서식 수록 목차
<table>
<tr><th>별 지</th><th>서 식 명</th><th>비고</th><th>페이지</th></tr>
<tr><td>별지제1호서식</td><td>기술수요조사서</td><td></td><td>#</td></tr>
<tr><td>별지제2호서식</td><td>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연구개발제안서</td><td>간소화</td><td>#</td></tr>
<tr><td>별지제2호의2 서식</td><td>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td><td>참여연구원 세부현황, 연구비 세부집행계획</td><td>#</td></tr>
<tr><td>별지제2호의3 서식</td><td>연구개발계획서(자율양식)</td><td>간소화</td><td>#</td></tr>
<tr><td>별지제3호서식</td><td>연차실적 · 계획서</td><td>간소화</td><td>#</td></tr>
<tr><td>별지제3호의2 서식</td><td>협약서</td><td></td><td>#</td></tr>
<tr><td>별지제3호의3 서식</td><td>협약 변경신청서</td><td></td><td>#</td></tr>
<tr><td>별지제4호서식</td><td>연구개발 최종보고서 · 요약서</td><td>간소화</td><td>#</td></tr>
<tr><td>별지제5호서식</td><td>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td><td></td><td>#</td></tr>
<tr><td>별지제6호서식</td><td>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td><td></td><td>#</td></tr>
<tr><td>별지제7호서식</td><td>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td><td></td><td>#</td></tr>
<tr><td>별지제8호서식</td><td>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td><td></td><td>#</td></tr>
<tr><td>별지제9호서식</td><td>외국정부 · 기관 · 단체 등 접촉신고서</td><td></td><td>#</td></tr>
<tr><td>별지제10호서식</td><td>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td><td></td><td>#</td></tr>
</table>
부록 1-2 주체별·단계별 첨부서류 분류
○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음(기준일 ’16.12.01.)</td><td>- 부처별 활용중인 첨부서류 안내</td></tr>
</table>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td><td></td><td></td><td>- 부처 내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첨부서류 추가·변경 활용 가능
○ 전문기관은 신청 후 협약 전 변경사항이 발생한 서류를 제외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이후 협약 등의 진행 단계에서 반복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조치
□ 부처별 연구수행주체별 · 연구수행단계별 붙임 또는 첨부서류 수록 목차
<table>
<tr><th>부처명</th><th>연구관리 전문기관명</th><th>페이지</th></tr>
<tr><td>교육부</td><td>한국연구재단</td><td>#</td></tr>
<tr><td>국토교통부</td><td>국토교통부</td><td>#</td></tr>
<tr><td>기상청</td><td>한국기상산업진흥원</td><td>#</td></tr>
<tr><td>농림축산식품부</td><td>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td><td>#</td></tr>
<tr><td>농촌진흥청</td><td>-</td><td>#</td></tr>
<tr><td rowspan="2">문화체육관광부</td><td>국민체육진흥공단</td><td>#</td></tr>
<tr><td>한국콘텐츠진흥원</td><td>#</td></tr>
<tr><td>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td><td>한국연구재단</td><td>#</td></tr>
<tr><td>미래창조과학부(ICT)</td><td>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td><td>#</td></tr>
<tr><td rowspan="2">방위사업청</td><td>국방과학연구소</td><td>#</td></tr>
<tr><td>국방기술품질원</td><td>#</td></tr>
<tr><td>보건복지부</td><td>한국보건산업진흥원</td><td>#</td></tr>
<tr><td>중소기업청</td><td>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d><td>#</td></tr>
<tr><td>산림청</td><td>-</td><td>#</td></tr>
<tr><td>산업통상자원부</td><td>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td><td>#</td></tr>
<tr><td>식품의약품안전처</td><td>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td><td>#</td></tr>
<tr><td>국민안전처</td><td>-</td><td>#</td></tr>
<tr><td>원자력안전위원회</td><td>한국원자력안전재단</td><td>#</td></tr>
<tr><td>해양수산부</td><td>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td><td>#</td></tr>
<tr><td>환경부</td><td>한국환경산업기술원</td><td>#</td></tr>
</table></td><td></td></tr>
<tr><td></td><td>(신 설)</td><td>188~</td><td>「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간소</td><td>- 간소화된 연구개발서식</td></tr>
</table>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기존(14년)</th><th>해당
페이지</th><th>개정(17년)</th><th>개정사유</th></tr>
<tr><td></td><td></td><td>274</td><td>화된 연구개발서식</td><td>첨부</td></tr>
<tr><td>121~123</td><td>부록 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용어정의
<table>
<tr><td>자유
공모</td><td>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u>선정방식으로서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모방식</u></td></tr>
<tr><td>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기관</td><td>대학, 학연협동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 공동관리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 등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으로서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부서에서 <u>연구책임자단위로</u> 통합하여 관리</td></tr>
<tr><td colspan="2"><u>(신 설)</u></td></tr>
</table></td><td>277</td><td>부록 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용어정의
<table>
<tr><td>자유
공모</td><td>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u>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모방식</u></td></tr>
<tr><td>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기관</td><td>대학, 학연협동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 공동관리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 등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으로서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부서에서 <u>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단위로</u> 통합하여 관리</td></tr>
<tr><td><u>R&D
바우처
사업</u></td><td><u>기업이 기술상용화에 필요한 R&D서비스를 바우처(출연금)를 사용하여 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사업
※ R&D 바우처 : 정부가 중소· 중견기업의 R&D사업을 위해 연구기관(출연연· 대학)이 보유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쿠폰 형태로 제공하는 연구개발 지원금</u></td></tr>
</table></td><td>- 제도 변화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 및 새로운 용어 안내</td></tr>
</table>